

의안번호	2200559
의 퇴 인	박정의원
회 답 일	2024. 8.22.
추계번호	24D0871
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별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“시·도협의회”)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매년 1억 4,300만원씩,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1,400만원(연평균 1억 4,30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지방비)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시·도협의회 설치 (안 제20조제2항 신설)	143	143	143	143	143	714	14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제2항 신설(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	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)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)에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제2항 신설(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 협의회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은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시·도 협의회 사례를 유사사례로 참조하여¹⁾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추계하고, 이때 회의장소는 시·도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의 시·도 협의회 설치에 따라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전국의 분쟁업무를 의뢰받고 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연간 개최회의 건수가 감소될 수 있어 예산 절감이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 이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음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시·도 협의회에 대하여 국비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시·도협의회 설치 (안 제20조제2항 신설)

□ 개정안에 따라 17개 시·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시·도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 및 안전검토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
- (현황)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전국의 분쟁업무를 의뢰받고 있는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최근 3년간 처리건수, 위원 수, 연간 개최회의수, 예산 현황은 아래 [표 2]와 같음

[표 2] 6개 분쟁조정협의회 현황: 2021~2023년

(단위: 명, 건, 백만원)

	위원 수	조정신청사건 처리건			연간 전체회의 개최횟수			연간 소요예산		
		2021	2022	2023	2021	2022	2023	2021	2022	2023
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	7	1,054	922	1,267	16	12	12	19	23	23
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	9	483	425	575	11	11	16	24	31	31
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	9	863	678	929	11	14	19	29	31	31
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	9	25	28	26	2	2	8	11	11	11
약관분쟁조정협의회	9	427	214	278	11	6	9	13	31	31
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	9	84	62	76	8	5	7	13	18	18
합 계	52	2,936	2,329	3,151	59	50	71	109	145	145
평 균	9	489	388	525	10	8	12	18	24	24

자료: 한국공정거래조정원(2024.6)

- (위원 수) 17개 시·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며, 개정안에 따라 각 협의회별로 위원장 포함 위원수는 9명(동 법 제20조의2제2항)으로 구성함
- (위원수당) 위원수당은 회의수당 및 안전검토비를 포함하여 위원장은 40만원, 위원은 3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함
- (연간 회의 개최횟수) 회의 개최횟수는 연간 3회로 가정하여 산정함
 - －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전국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최근 3년간 처리건수는 25~28

- 건, 연간 회의 개최횟수는 평균 4회로 나타남
- 17개 시·도별로 협의회가 설치되는 경우 이보다는 개최회의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 연간 3회로 가정함
 - (소요비용) 시·도 협의회를 17개 시·도에 설치하는데 따른 소요비용(지방비)은 연간 1억 4,300만원[17개 시·도×(40만원×1명+30만원×8명)×3회]으로 추정됨

[표 3] 시·도 협의회 설치 시 추가재정소요(지방비):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개소수 (개, a)	17	17	17	17	17	
위원장 수 (명, b)	1	1	1	1	1	
위원장 지급단가 (만원, c)	40	40	40	40	40	
위원 수 (명, d)	8	8	8	8	8	
위원 지급단가 (만원, e)	30	30	30	30	30	
연간 개최회의수 (회, f)	3	3	3	3	3	
소요비용 (백만원, $a \times ((b \times c + d \times e) \times f)$)	143	143	143	143	143	714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